



시 보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1414호 2019. 12. 2.(월)

예 규

- 목포시 지방공무원 특별승진 운영 지침 발령 ----- 2

고 시

-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 8

공 고

- 목포시 금고약정 협력사업비 총액 공고 ----- 10

회람							
----	--	--	--	--	--	--	--

목포시 예규 제20호

「목포시 지방공무원 특별승진 운영 지침」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발령한다.

2019년 12월 2일

목 포 시 장

목포시 지방공무원 특별승진 운영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목포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제25조에 따라 목포시 소속 공무원에 대한 특별승진임용의 세부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직사회에 건전한 경쟁을 강화하여 더 열심히 일하는 근무분위기 정착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지침에 따른 특별승진 대상자는 목포시 소속 5급 이하 일반직 및 연구·지도직 공무원으로 한다.

제3조(자격요건) ① 특별승진 대상자는 평소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자세로 열심히 근무함으로써 모든 공무원의 귀감이 되고,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한 구체적이고 뚜렷한 공적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규제혁신, 고질적 민원업무 개선, 창의적 업무개선, 예산절감 등으로 주민 편의 증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2. 적극행정 등 국정과제 또는 기업(투자) 유치 등 시정 역점과제의 성공적 추진으로 경제위기 극복 및 행정발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3. 사회복지 등 주민수요가 급증한 업무를 적극적·능동적으로 수행하여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4. 격무·기피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5. 「숙련기술장려법」에 따른 “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되거나 국제기능을

림픽대회에서 입상하여 국가기능발전에 기여한 공무원

6. 임용권자가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수준에 상응하는 탁월한 업무실적으로 지방행정 발전에 공헌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제4조(추천기준) ① 각 부서의 장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특별승진 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제3조의 기준에 적합한 유공이 있는 사람 중에서 추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승진 대상자로 추천될 수 있는 사람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1년 단축가능) 이상 해당 직급에 재직한 사람으로서 영 제34조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제5조(특별승진절차) ① 각 부서의 장은 특별승진 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국·소·단장의 결재를 받아 정기인사 시기 1월전(11월말, 5월말)까지 인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특별승진 추천서(별지 제1호 서식)
2. 특별승진 공적조서(별지 제2호 서식)
3. 그 밖에 공적사실을 뒷받침할 증빙서류

② 인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특별승진요구가 있을 경우, 제출서류와 제6조의 공적조사 결과를 목포시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이라 한다)에 회부하여야 한다.

제6조(공적조사)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특별승진 대상자로 추천된 사람의 공적사실을 감사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

제7조(특별승진의 심의) ① 인사위원회는 특별승진 대상자에 대하여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특별승진요건 해당여부와 추천 공적의 중요성, 타당성, 목포시 행정발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격여부를 심의·의결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특별승진 대상자에 대한 공적사항 등을 심사할 때에는 제5조제1항의 첨부서

류와 제6조의 공적사실 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엄정하게 심사·평가하여야 한다.

제8조(특별승진임용) 임용권자는 제7조에 따라 심의·의결되어 특별승진 대상자로 통보 받은 때에는 상위직급에 승진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6급 공무원은 인사위원회의 승진 의결 대상자가 된다.

부 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특별승진 추천서

1. 대상자

소속	직급	성명	생년월일	담당업무

2. 추천공적요약

※ 기재내용 : 특별승진 요건에 해당하는 업무실적과 효과 등을
구체적으로 요약 기재

위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상기 자를 특별승진 대상자로
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추천자) 직위 : 성명 : (인)

- 붙임 1. 공적조서 1부.
2. 그 밖에 공적 입증 자료

목포시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특별승진 공적조서

대 상 공무원	소 속	직 급	성 명	생년월일	현직급임용일

공 적 사 항

(작성자) 직위 : 성명 : (인)

(확인자) 직위 : 성명 : (인)

(추천자) 직위 : 성명 : (인)

[별지 제3호 서식]

특별승진 공적사실 조사서

1. 대 상 자	소 속 :		
	직급·성명 :		
2. 공적사실조사			
가. 특별승진 공적요건			
나. 업무실적 사실관계			
다. 최종 조사의견(비위사실 포함)			
3. 조 사 자			
감사실장	(인)	조사팀장	(인)

목포시 고시 제2019-214호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건물 등이 멸실되어 도로명주소를 폐지하고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폐지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2일

목 포 시 장

○ 폐지하는 도로명주소

순번	폐지하는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 사유
	불 임	참 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민원봉사실(☎061-270-8628)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조서)

연번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사유
1	전라남도 목포시 삼학로231번길 16-2	2019.12.02	건물멸실
2	전라남도 목포시 삼학로231번길 14	2019.12.02	건물멸실
3	전라남도 목포시 자유로148번길 8	2019.12.02	건물멸실

목포시 공고 제2019-1633호

목포시 금고약정 협력사업비 총액 공고

「목포시 시금고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금고은행에서 출연할 협력사업비 총액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2일

목 포 시 장

1. 약정기간 : 2020. 1. 1 ~ 2022. 12. 31 (3년)

2. 목포시금고에서 출연할 협력사업비 총액

금 고 구 분		협력사업비 총액
합 계		1,750,000,000원
제 1 금고	광주은행 목포지점	1,050,000,000원
제 2 금고	NH농협은행 목포신안시군지부	700,000,000원

※ 시금고 출연금액은 3년 분할 납부 (매년 3월 31일까지 납부)